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

발의연월일: 2024. 5. 30.

발 의 자:이철규·권성동·이인선

송언석 • 박정하 • 유상범

구자근・송기헌・허 영

정희용 · 이양수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,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.

또한,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21조의36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장의12(제121조의36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5장의12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

제121조의36(폐광지역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) ①
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을 여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폐광지역여행객"이라 한다)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(이하 이 조에서 "지정면세점"이라 한다)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(이하 이 조에서 "면세물품"이라 한다)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관세 및 담배소비세(이하 이 조에서 "부가가치세등"이라 한다)를 면제(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다.
② 지정면세점은 「관세법」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「관세법」 제196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면세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

도 제1항에 따라 폐광지역여행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.

-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.
-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 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.
- ⑤ 폐광지역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⑥ 폐광지역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1명당 연도별로 6 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.
- ⑦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, 면세물품의 판매절차,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,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,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,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폐광지역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  - ②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, 주세 및 담배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  - ③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5장의12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
	조세특례
<u>&lt;신 설&gt;</u>	제121조의36(폐광지역여행객 면
	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
	례) ①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
	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
	에 따른 폐광지역을 여행하는
	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자(이하 이 조에서 "폐광지역
	여행객"이라 한다)가 같은 법
	제24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
	(이하 이 조에서 "지정면세점"
	이라 한다)에서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물품(이하 이 조에서
	"면세물품"이라 한다)을 구입하
	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
	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,
	관세 및 담배소비세(이하 이
	조에서 "부가가치세등"이라 한
	다)를 면제(부가가치세의 경우
	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
	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	한다.

- ② 지정면세점은 「관세법」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「관세 법」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외국으로 해당 면세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폐광지역여행객 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 다.
-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.
 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의 것으로 한
- ⑤ 폐광지역여행객이 지정면세 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 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 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
다.

는 금액으로 한다.

⑥ 폐광지역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1명당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.
⑦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, 면세물품의 판매절차,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, 미반출물품에 대한 관리절차, 면세물품의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,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